

<별지 제3호 서식>

청원요지서

접수년월일	2014. 02. 14		접수번호	2
청원인	주소	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-6 소행주 5층 503호	성명	한진숙외 724인
소개의원	오진아 의원		소관위원회	복지도시 위원회
건명	마포구 아동·청소년 방과후 돌봄 기본조례 제정 청원			

요지

-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초등학생 328만명 중 97만여명이 방과후에 '나홀로 아동'인 실정이며, 마포구내에도 방과후 매일 1시간 이상 혼자 있는 아동비율이 41%(2011년 2개 초등학교 설문조사 결과)에 달하고, 학교 방과후교실을 제외한 지역사회 아동 돌봄은 전체 서비스 필요 아동중 5.8%에 불과함
- 방과후 아동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「마포구 아동·청소년 방과후 돌봄 기본조례」를 제정하여 학부모들의 방과후 돌봄 고민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달라는 청원임

* 마포구 아동·청소년 방과후 돌봄 기본조례(안) 주요 내용

1.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서비스 내용의 활성화
2. 방과후 돌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
3. 방과후 서비스의 활성화와 상호연계를 위한 방과후 돌봄 위원회 구성 및 방과후 돌봄지원센터 설치